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주간보호센터

2026

효사랑실버센터

센터 운영규정 중 일부 발췌

제 6장 이용 계약

제3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2조(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33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 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34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부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계좌번호 : 국민은행 효사랑실버센터 660837-04-004497 로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별지첨부내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3~6시간 수가의 80%를 산정할 수 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순위 0~25%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보험료 순위 25~50%	9%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비급여 항목	비 용
중식비(1회/일)	3,000
석식비(1회/일)	3,000
간식비(2회/일)	1,000

제35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8:00~19:00 (공휴일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 (계약)

①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센터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기간 5일을 둔다.
3. 관찰(적응)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입소판정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계약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4.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 각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37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④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⑤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센터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39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